경기도 고시 제2024-383호

김포 항공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 승인 고시

김포 항공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. 12. 19.
경 기 도 지 사

1.산업단지 개요
가. 관리기관(변경없음)
○ 김포시
나. 조성목적(변경없음)
○ 첨단항공산업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외국자본 유치로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관련부품 및 장비산업의 국산화, 기술이전 및 첨단 기술 습득의 계기로 활용
다. 추진경위(변경)
○ '04.09.16.: 경기도·김포시·(유)한국타임즈항공과 MOU 체결
○ '05.11.07.: 김포항공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5-39호)
○ '06.03.29.: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승인
○ '06.06.12.: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6-174호)
○ '06.08.14.: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6-260호)
○ '07.12.12.: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7-465호)
○ '08.07.07.: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8-194호)
○ '09.04.16.: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9-143호)
○ '09.07.28.: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9-308호)
○ '09.07.28.: 부분준공 인가 (1공구:234,516㎡)(경기도 고시 제2009-779호)
○ '11.08.26.: 2011년 제6차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재심의(조건부 의결)
○ '11.10.06.: 산지전용협의 완료
○ '11.12.20.: 토석채취허가 완료
○ '11.12.27.: 산업단지 계획(변경)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1-393호)
○ '11.11.28.: 2공구 공사착공
○ '13.01.25.: 산업단지 계획(변경)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3-14호)
○ '14.02.04.: 산업단지 계획(변경)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4-23호)
○ '15.07.20.: 산업단지 계획(변경)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5-5124호)
○ '16.03.08.: 산업단지 계획(변경)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6-5051호)
○ '16.11.08.: 산업단지 계획(변경)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6-5235호)
○ '17.09.13.: 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(경기도 공고 제5807호)
○ '18.06.11.: 산업단지 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18-5117호)
○ '19.04.12.: 김포 항공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19-5051호)
라. 분양현황(변경)
(기정)

(단위 : ㎡)

구 분	분양대상	분양현황			조성기간	사업시행자
		합 계	분 양	미 분 양		
계	335,511.4	335,511.4	335,511.4	-	-	
산업시설용지	201,805.5	201,805.5	201,805.5	-	'05 ~'16.12	(유)한국 타임즈항공
지원시설용지	31,532.1	31,532.1	31,532.1	-	〃	
공공시설용지	102,173.8	102,173.8	102,173.8	-	〃	

※ 상기 사항은 분양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(변경)

(단위 : ㎡)

구 분		분양대상	분양현황			조성기간	사업시행자
			합 계	분 양	미 분 양		
계		235,737.9	235,737.9	235,737.9	-	-	
산업시설구역		201,805.5	201,805.5	201,805.5	-	'05～'16.12.	(유)한국타임즈항공
지원시설구역	소계	31,532.1	31,532.1	31,532.1	-	〃	
	지원시설용지	31,532.1	31,532.1	31,532.1	-		
공공시설구역	소계	2,400.3	2,400.3	2,400.3	-	〃	
	주차장	2,400.3	2,400.3	2,400.3	-		

※ 상기 사항은 분양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마. 입주현황(변경)

(기정)

구 분	입주업체수			면 적(㎡)		
	계	산업시설	지원시설	계	제조업	기타
계	22	18	4	233,337.6	201,805.5	31,532.1
2018.12월말	12	11	1	146,581.3	143,154.2	3,427.1
향후계획	10	7	3	86,756.3	58,651.3	28,105.0

※ 상기 사항은 추후 추가 입주수요(분양/임대)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음

(변경)

구 분	입주업체수			면 적(㎡)		
	계	산업시설	지원시설	계	제조업	기타
계	8	8	-	201,805.5	201,805.5	-
2024.8월말	8	8	-	201,805.5	201,805.5	-
향후계획	-	-	-	-	-	-

※ 상기 사항은 추후 추가 입주수요(분양/임대)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음

바. 입지여건(변경없음)

시 설 명	총 계 획	개발기간	시 행 기 관
도 로	• 중로1류 : L=412.0m B=20.0m • 중로2류 : L=1,193.0m B=15.0m	'05 ~'16.12	(유)한국타임즈항공
용 수	• Q = 231.9㎥/일	〃	〃
폐기물처리	• 매립, 소각 및 위탁처리	〃	〃
오·폐수처리(㎥/일)	• 생활오수 : 122.1 • 공장폐수: 81.9	〃	〃
전 력	• 37,053Mwh/년	〃	한국전력공사
통 신	• 225회선	〃	㈜KT

2.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가. 기본방향(변경)

1) 기본방향(변경)

(기정)

○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, 제39조 근거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

○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, 지원시설용지,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관리함

(변경)

○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, 제39조 근거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

○ 산업단지내 용지는 산업시설구역, 지원시설구역, 공공시설구역,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

2) 추진방향(변경없음)

○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하도록 유도

○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
○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입주 배제

나.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(변경)

1) 용도별 구획 면적(변경)

(기정)

(단위 : ㎡, %)

총 면 적	산업시설용지	지원시설용지	공공시설용지
335,512.4 (100.0)	201,805.5 (60.1)	31,532.1 (9.4)	102.1738 (30.5)

(변경)

(단위 : ㎡, %)

총 면 적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
335,512.4 (100.0)	201,805.5 (60.1)	31,532.1 (9.4)	30,233.4 (9.0)	71,941.4 (21.5)

□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

(단위 : ㎡, %)

총 면 적	공장시설	물류시설	기타시설
201,805.5 (100.0)	177,805.5 (88.1)	24,000.0 (11.9)	- (-)

2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(변경)

가) 산업시설구역

(기정)
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에 한하며, 입주 가능 업종은 김포 항공일반산업잔디 입주업종 중 필지별 최초 공장등록 업종(산업분류번호 중분류)에 한하며, 이후 유사업종으로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 후 결정

(변경)
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에 한하며, 입주 가능 업종은 김포 항공일반산업잔디 입주업종 중 필지별 최초 공장등록 업종(산업분류번호 중분류)에 한하며, 이후 유사업종으로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 후 결정
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
나) 지원시설구역

(기정)
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
○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건축 행위는 별표# 1에서만 가능함

(변경)
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
○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건축 행위는 별표# 1에서만 가능함
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
다) 공공시설구역

(기정)

○ 공공·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공시설

(변경)
○ 공공·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공시설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
라) 녹지구역
(기정)
○ 녹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(변경)
○ 녹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하며,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에 설치)

마) 구역별 건축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#1에 따름

3) 용도별 구획 평면도 : 별표# 2 (변경)

다. 업종별 배치계획(변경)

1) 업종별 배치현황(변경)

(기정)

구 분	배 치 계 획		2018.12월말 현재		향후계획	
	업체수	면적(㎡)	업체수	면적(㎡)	업체수	면적(㎡)
합 계	6	177,805.5	3	143,154.2	3	58,651.3
기타운송장비제조업(31)	6	177,805.5	3	143,154.2	3	58,651.3
항공운송업(51)	12	24,000.0	8	24,000.0	4	-

※ 업종배치계획 생략 : 31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, 51. 항공 운송업

(변경)

구 분	배 치 계 획		2024.7월말 현재		향후계획	
	업체수	면적(㎡)	업체수	면적(㎡)	업체수	면적(㎡)
합 계	8	201,805.5	8	143,154.2	-	-
기타운송장비제조업(31)	5	177,805.5	5	177,805.5	-	-
항공운송업(51)	3	24,000.0	3	24,000.0	-	-

※ 업종배치계획 생략 : 31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, 51. 항공 운송업

※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 발전업(D35114)에 한함)에 대하여 허용. 단, 관리기관에 입주계약, 구조물 설치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.

2) 업종별 배치기준(변경없음)
○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화 및 관련업종 인접배치
○ 업종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
○ 단지 중심도로 주변에 단지의 쾌적성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가급적 진출입로 계획을 자제함
○ 위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 숙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

3) 업종별 배치계획 : 별표#3 (변경)

라. 입주관리계획(변경)

1) 입주대상업종(변경)

(기정)
○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(31)
○ 항공운송업 (51)

(변경)
○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(31)
○ 항공운송업 (51)
※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 발전업(D35114)에 한함)에 대하여 허용. 단, 관리기관에 입주계약, 구조물 설치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.

【입주제한 업종】(변경없음)
- 공업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 업종
-「대기환경보전법」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
-「대기환경보전법」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사업장 내지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(다만, 생산공정중 화석연료(액체 및 고체)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)
-「물환경보전법」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(다만,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 제외)
-「물환경보전법」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3의 1종사업장 내지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
※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에서「물환경보전법」으로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

2) 입주자격 (변경)
○ 산업시설구역
(기정)
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
(변경)
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
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
○ 지원시설구역
(기정)
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
-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입주를 허가하는자
(변경)
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
-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입주를 허가하는자
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

3) 입주 우선 순위(변경없음)
가) 김포시 지역에서 이전(창업)하는 업체
나)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
다) 기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
※ 동일 순위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.
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③항)

4) 입주절차(변경없음)
○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시행기관과 입주 계약 체결

5) 분양(분할)한도(변경없음)
○ 분양면적 한도(업체당) : 1,000㎡ 이상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1호내지3호에 해당하는 경우 900㎡ 이상)

마. 사후관리계획(변경없음)

1) 산업용지 관리

○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및 산업단지 관리지침,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

2) 환경관리

○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오염, 소음·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함

○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·폐수,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함

○ 산업단지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위하여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

○ 오폐수처리장 시설개요(산업단지내 오폐수처리장 이용)

- 규 모 : 1,130.0㎡
- 처리용량 : 204.0㎥/일
- 처리방법 : 호기심접촉촉산화법
- 수질기준

구 분	BOD	COD	SS	T-N	T-P
방류수질	10	20	10	20	2

○ 재활용을 제외한 폐기물은 소각 후 매립

※ 폐기물 처리 방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

○ 특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하여 처리

3) 안전관리

○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인근 파출소, 소방파출소 등과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 체계 구축

○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5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재해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복구 실시

○ 산업단지의 재해예방을 위한 방제계획을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 수립하여 산업단지 내 재해방지 유도

○ 산업단지 내 관리시관 및 입주사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및 단지내 안정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지

4) 공원·녹지관리

○ 김포항공일반산업단지는 항공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 산업단지 임을 감안하여 공원·녹지의 유지관리를 사업시행자(산업단지 총괄운영자)가 자체 관리

○ 주기적인 점검·보수·유지관리를 수시로 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결과를 관리기관에 연단위 보고

○ 사업시행자가 기 제출한 문서[TAK17071001(2017.07.13.), TAK170731-001(2017.07.31.)]에 따라 대규모 사면에 대한 특별관리 시행

바.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(변경없음)

1) 공장설립 지원

○ 공장설립 업무 인·허가 절차 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

○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시 완료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

2) 생산활동 지원

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

○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

○ 기술개발 및 수출, 무역, 박람회 등 산업정보 제공

○ 구인·구직의 날 운영 등 산업인력 수급 지원

○ 각종 지원시책 추진시 우대
3)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
○ 산업인력공단,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
○ 단지내 교육시설을 활용한 근로자의 항공관련 기술습득 및 안정적 인력 수급확보
○ 단지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간 및 운동시설 등을 통한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지원
4)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
○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
○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
○ 입주기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

사.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1)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
2)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
3) 분양용지의 불법전매·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
※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김포시 조례에 따름

〔별표# 1〕

□ 산업시설구역

■ 산업시설용지(변경)

위치	구 분			계 획 내 용
산업시설용지	용도	허용	기정	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○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토지가 아닌 건축 옥상에 배치되는 업종임
			변경	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○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토지가 아닌 건축 옥상에 배치되는 업종임 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		불허	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주 차			○ 150㎡ 당 1대
	건폐율			○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(70%이하)
	용적률			○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(350%이하)
	건축선			○ 15m 이상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○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

□ 지원시설구역

■ 지원시설용지(변경)

위치	구 분			계 획 내 용
지원시설용지	용도	허용	기정	○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용도 -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- 교육연구시설 - 운동시설 - 업무시설 - 의료시설(단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장례식장 제외) - 보육시설용도 및 그 부대·복리시설 - 기타 공공시설용도 및 그 부대·복리시설 - 운수시설, 창고시설, 자동차관련시설 -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
			변경	○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용도 -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- 교육연구시설 - 운동시설 - 업무시설 - 의료시설(단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장례식장 제외) - 보육시설용도 및 그 부대·복리시설 - 기타 공공시설용도 및 그 부대·복리시설 - 운수시설, 창고시설, 자동차관련시설 -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 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		불허	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주 차			○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한하며, 기계식 주차장 불허 ※ 단, 암반 등의 지질로 인하여 토지 굴착 등에 난공사가 예상되는 경우(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후 검토)에 한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
	건폐율			○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(70%이하)
	용적률			○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(350%이하)
	건축선			○ 15m 이상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○ 25m 이상의 도로에서 진출입 불허

■ 주차장용지 (변경)

위치	구 분			계 획 내 용
주차장용지	용도	허용	기정	○ 주차전용 건축물일 경우 주차장법에 따름 ○ 노외주차장일 경우 부대시설로서 휴게소, 간이매점,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, 주차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
			변경	○ 주차전용 건축물일 경우 주차장법에 따름 ○ 노외주차장일 경우 부대시설로서 휴게소, 간이매점,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, 주차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		불허		○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·안마원·종교집회장, 장의사
	주차			○ 주차장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(90%이하)
	건폐율			○ 주차장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(90%이하)
	용적률			○ 층수제한(7층 이하로 주차장법 규정에 따름) 및 용적률(450%이하)
	형태 및 외관			○ 주차타워일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
	건축선			○ 주출입구 정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○ 25m이상의 도로에서 진출입 불허

경 기 도 보

제7653호 2024. 12. 19. (목)

〔별표# 2〕 용도별 구획 평면도 (변경)
(기정)

구 분	면 적 (㎡)	구성비(%)	비고
계	335,512.4	100.0	
산 업 시 설 용 지	201,805.5	60.1	
지 원 시 설 용 지	31,532.1	9.4	
공 공 시 설 용 지	102,174.8	30.5	
도 로	26,703.1	8.0	
주 차 장	2,400.3	0.7	
공 원	13,063.9	3.9	
녹 지	58,877.5	17.6	저류시설 5,062㎡ 포함
완 충 녹 지	52,205.5	15.6	
원 형 녹 지	6,672.0	2.0	
폐 수 종 말 처 리 장	1,130.	0.3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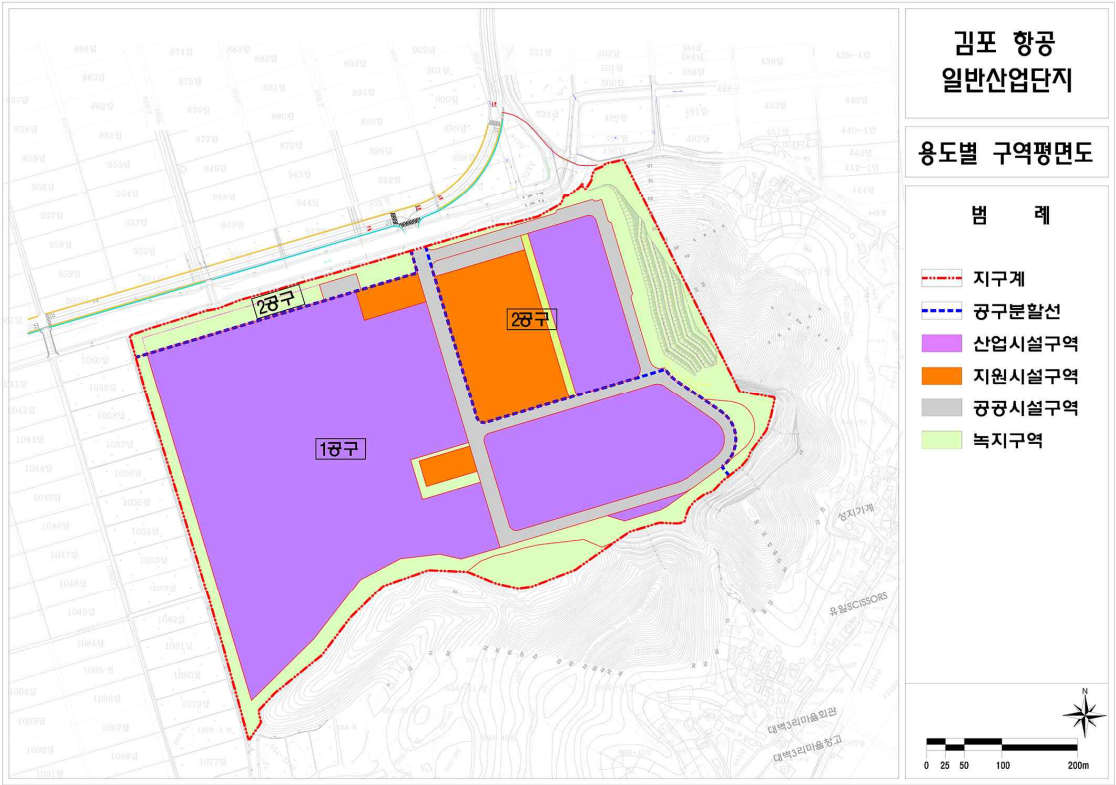


경 기 도 보

제7653호 2024. 12. 19. (목)

(변경)

구 분	면 적 (㎡)	구성비(%)	비고
계	335,512.4	100.0	
산업시설구역	201,805.5	60.1	산업시설용지
지원시설구역	31,532.1	9.4	지원시설용지
공공시설구역	30,233.4	9.0	도로, 주차장용지, 폐수종말처리장
녹지구역	71,941.4	21.5	공원(저류시설 포함), 녹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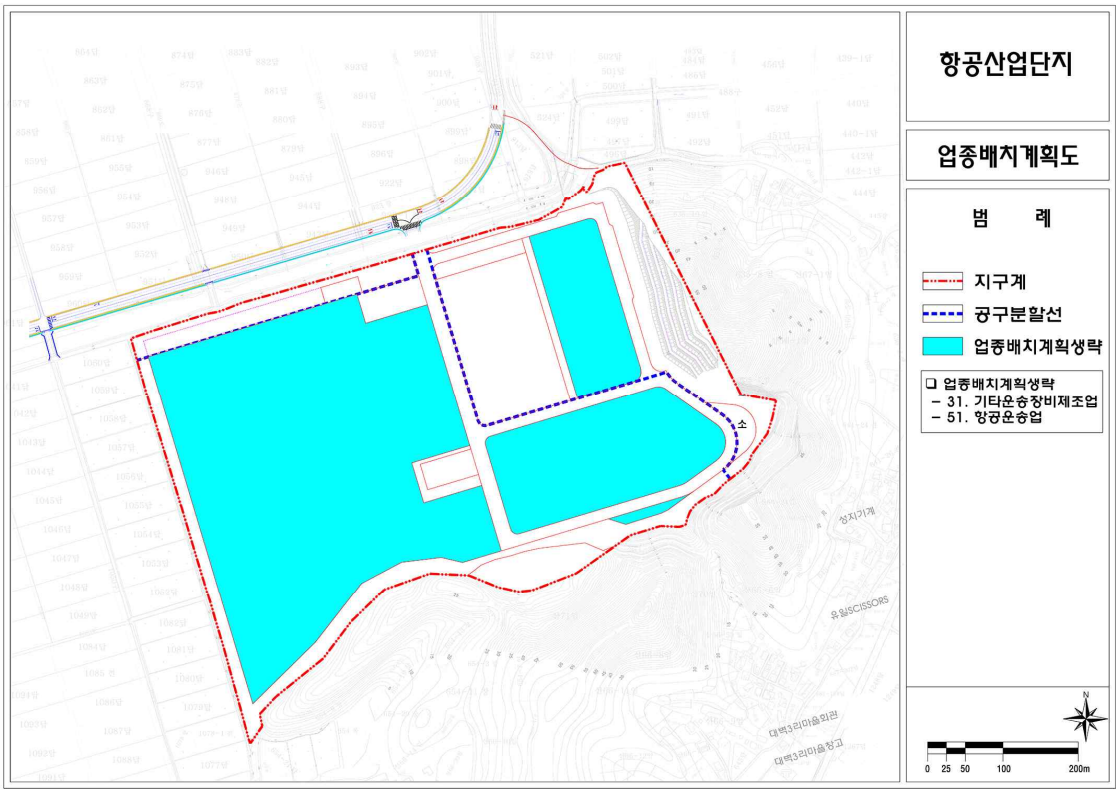
경 기 도 보

제7653호 2024. 12. 19. (목)

〔별표# 3〕 업종배치계획도(변경)
(기정)

구 분	면 적 (㎡)	구성비(%)	비고
합 계	201,805.5	100.0	
31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177,805.5	88.1	
51. 항공운송업	24,000.0	11.9	

※ 업종배치 생략 : 31. 기타운송장비제조업, 51. 항공운송업



경 기 도 보

제7653호 2024. 12. 19. (목)

(변경)

구 분	면 적 (㎡)	구성비(%)	비고
합 계	201,805.5	100.0	
31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177,805.5	88.1	
51. 항공운송업	24,000.0	11.9	

※ 업종배치 생략 : 31. 기타운송장비제조업, 51. 항공운송업

※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 발전업(D35114)에 한함)에 대하여 허용. 단, 관리기관에 입주계약, 구조물 설치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.

